

감 사 결 과 처 분 요 구 서

No. 2021-					
소관부서	시행년도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조치방법	금 액(원)	
○○○○처 ○○○○처	2021	-부서 주의 -시정 및 권고	-	-	주의(1명)

제 목 : 파견근로자 대우 및 구내식당 운영 특정 감사

1. 현황

- ○○○의 ○○○○처는 2017년 12월부터 아침식사를 위해 조리원들의 근로계약서 변경 없이 구두 합의만으로 아침식사 조리를 추가 시행해 오다가 2020년10월에 아침 식단 업그레이드를 추진하였음.
- 이 과정에서 업무적 부담을 느낀 조리원 ○○○씨(파견근로자)가 2021.2.18.일에 시간 외 근무, 본업무 외 타업무 처리 등의 부당노동행위와 ○○○의 언어모욕을 들어 감사를 청구하였음.

2. 위법부당내용

○ 부당노동행위

- 출퇴근 기록이 담긴 지문인식기와 CCTV 자료를 확인한 결과 ○○○씨 주장을 뒷받침 하는 시간외 근무 내역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휴식시간 없이 근로했다는 주장도 이를 증빙·증언 자료가 없어 확인되지 않음
- 식자재 발주업무 등 본업무 외 업무를 했다는 주장은 지금까지 조리원들의 묵시적 동의로 행해왔고, 다른 소규모 구내식당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음을 감안할 때 위법적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는 없음

○ 직장 내 괴롭힘(언어적 모욕)

- ○○○씨와 ○○○ ○○의 주장이 서로 엇갈리는 가운데, 제3자인 ○○○씨는 당시 ○○○은 아줌마 혹은 아주머니 호칭과 함께 관련 발언을 1회 하였는데 다만 그 내용은 ○○○씨 진술보다 순화된 것이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의 행위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볼 수는 없음.

3. 처분요구내용

- ① ○○○○처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변경하여 운영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간 합의만으로 임의로 근로시간을 변경하여 장기간 운영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구내식당 조리사들로 하여금 민원을 야기토록 원인을 제공한 점에 대하여 “부서 주의” 처분함 [관련부서] · ○○○○처 - 부서 주의
- ② ○○○ ○○은 식당에서 근무하는 조리사에게 상대방이 오해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하급자와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시켜 ‘품위손상’을 초래한 점에 대하여 ‘주의’ 처분함 [관 련 자] · ○○○○처 ○○ ○○○ - 주의
- ③ ○○○○처는 현장 구내 식당 파견근로자 근로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현장 여건에 맞게 근무시간, 업무내용(식자재 주문, 아침식사 준비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현재 근무중인 현장 구내식당 파견근로자 포함하여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 즉시 근로계약서 변경 조치(시정), 또한 현장 구내식당 운영관련 식수인원에 따른 조리사 인원수, 식당비용 지원 기준, 조리기구 비치, 예산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통일적인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현장 식당간 형평성 논란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권고) [관련부서] · ○○○○처 - 시정 및 권고